

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 4. 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청소년수련시설인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청소년 기관·단체(법인)에 의해 운영되도록 추진함에 있어,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 및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·관리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동의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·관리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
- 추진 필요성

-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더욱 다양해지는 청소년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 역량 강화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법인(단체)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범위 :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
- 사무내용
 - 문화의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·관리
 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 - 청소년의 자치·자율활동의 지원
 -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
 -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, 청소년 상담 및 지원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
- 위치 : 평창읍 평창중앙로 67, 평창문화복지센터 4층
- 시설규모 : 연면적 824.38m²
- 구조 : 다목적강당, 동아리활동실, 자치활동실, 사무실 등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7. 12. 31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
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)

○ 신청자격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의제8호에 의거,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최소 3년간 청소년시설(육성 및 복지분야)의 위탁 추진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「청소년 기본법」에 의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

-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,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
- ② 청소년활동·복지·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
- ③ 청소년학과·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(학교법인을 포함한다)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민간위탁금 274백만원 (국비 14, 군비 260)

- 종사자 인건비(219백만원), 사업비(40백만원) 및 운영비(15백만원)

※ 매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금 결정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
- 다양해지는 청소년의 의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분야에서 오랜기간 축적된 전문지식을 보유한 청소년 기관·단체가 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이 효율적임

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법률로 정한 청소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위탁으로 공공성과 안전성 확보

- 경제적 효율성
 - 군 직영에 따른 예산보다 인력충원 및 인건비 분야에서 위탁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나
 -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, 전문인력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높음
-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-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기관·단체의 위탁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및 체계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 가능
- 성과 측정의 용이성
 - 인력관리, 발굴 및 연계 실적, 프로그램 운영실적, 예산 및 행정 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 평가로 성과 관리 용이
-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- 정기적인 지도·점검 실시(연1회 이상) 및 여성가족부 사업수행 적합성 평가(2년 주기)로 운영의 투명성 확보
-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
 - 전문화된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청소년 육성 및 역량강화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·관리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

아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추진현황(경과)
 -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검토보고 : '24. 2. 13.
 -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: '24. 3. 6.

○ 관련자료

- 강원 도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 : 34개소 * 미설치 : 양양

• 직영(22) : 강릉, 삼척(3), 철원, 고성(2), 양구(5), 인제(4),

평창(2), 화천, 홍천, 횡성, 고성

• 위탁(12) : 동해, 속초, 영월, 원주(3), 정선(3), 춘천, 태백(2)

○ 관련법령

-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16조

- 「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7조, 제8조

관계법령 발취

□ 청소년활동 진흥법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, 위탁 계약의 기간·조건·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□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7조(운영)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위탁운영) ① 제7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과 기준절차는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군수는 청소년육성 보호 사업에 관한 사명감과 의욕, 지역사회공익 기여도, 사업 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위탁운영 신청서에는 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